

## 부산광역시 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

부산광역시 북구 통·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7월 8일

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



### 1. 조례명 : 부산광역시 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2. 개정이유

- 가. 정보통신의 발달로 구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이 쉽고 빨라짐에 따라 반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, 통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·반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
- 나. 연령제한 상한선은 폐지하도록 하고, 연령제한폐지로 인한 장기독점 방지를 위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명시화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통 여건에 따른 반장제의 탄력적 운영(안 제5조제1항)
- 나. 연령 상한제한 폐지 및 통장 모집방법 명시(안 제5조제2항제1호)
- 다.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삭제(안 제5조제2항제2호)
- 라. 통·반장 연임 규정 신설(안 제5조제2항제3호~제4호)

#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[참조 : 의회사무국장,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(구포동)], [전화 309-4092, 팩스 309-4099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 부산광역시 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4조의2제5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구청장”을 “부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통장”을 “통장을 두고”로, “둔다”를 “둘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기준에 의하여”를 “각 호의 기준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당해 통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65세이하의 자로서”를 “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”로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.

같은 조 제2항제3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통·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임기만료시마다 위·해촉하되 통장의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같은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통장모집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 횟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같은 조 제3항 중 “통장” 을 “동장은 통장” 으로, “자에 대하여” 를 “사람에게” 로 한다.

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 를 “각 호” 로 하고, 제5조의2제6호 중 “통장 윤리강령” 을 “별표의 부산광역시 북구 통장 윤리강령” 으로,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7.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

제5조의2제8호(종전의 제7호)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5조의3을 삭제한다.

제5조의4제1항 중 “통·반장은” 을 “통·반장을” 으로 한다.

같은조 같은항 및 제2항 중 “구성 운영” 을 각각 “구성 · 운영” 으로 하고, “정한다” 를 “정하되 통·반장은 심의위원회가 될 수 없다.” 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반내” 를 “반 내” 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 를 “각 호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 중 “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” 를 “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보고 하여야” 를 “보고하여야” 로 , 같은조 제1항 단서 중 “동자체” 를 “동 자체” 로 한다.

제9조조 제2항 중 “건의사항중” 을 “건의사항 중” 으로, “지체없이” 를 “지체 없이” 로, “당해기관” 을 “해당기관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장기간을 요하는” 을 “장기간이 필요한” 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구성운영” 을 “구성 · 운영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명과 위원 약간명으로” 를 “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 를 “각 호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한다.

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지득한”을 “알게 된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사용등”을 “사용 등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통장에게는”을 “통장에게”로, “소요되는 실비로”를 “필요한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”로, “동소속”을 “동 소속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② (통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통장에 대하여 제5조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.

【별표】

## 부산광역시 북구 통장 윤리강령(제5조의2제6호 관련)

부산광역시 북구 통장으로서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구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재직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실천하고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.

- 첫 째, 우리는 일선 동행정의 봉사자로서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공사생활에 모범을 보여 올바른 통장상을 정립하고 통장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.
- 둘 째, 우리는 임무수행 과정에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한 알선·청탁을 하지 아니한다.
- 셋 째, 우리는 임기 중에 각종 개발사업과 주민자체사업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, 개인의 이익을 위한 주민서명 활동 등 단체행동을 주도하지 않는다.
- 넷 째, 우리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며 다양한 지역주민의 여론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.
- 다섯째, 우리는 구·동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옹호에 앞장선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 | <p>제1조(목적) -----<br/>----- <u>제4조의2제5항에 따라</u>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 |
| <p>제3조(획정기준) 통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<u>각호</u>와 같다.</p> <p>1. 반은 지역특성에 따라 3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. 단,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<u>구청장</u>이 조정할 수 있다.</p>  | <p>제3조(획정기준) -----<br/>----- <u>각 호</u> -----.</p> <p>1.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 <u>부산광역시 북구</u><br/><u>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</u><br/>-----.</p>   |
| <p>제5조(통·반장의 위촉) ① 통에 <u>통장</u>, 반에 반장을 <u>둔다</u>.</p> <p>② 통·반장은 다음 <u>각호</u>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.</p> <p>1. 통장은 <u>당해 통 관할구역내</u>에 거주하는 30세이상 65세이하의 자로서,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.</p> | <p>제5조(통·반장의 위촉) ① ---<br/><u>통장을 두고 ---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② ----- <u>각 호의 기준에 따라</u>-----.</p> <p>1. ----- <u>해당 통 관할구역 내</u>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, ---<br/>-----<br/>---<u>사람</u> -----.</p> |

|   |  |
|---|--|
| <p>2. 반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한다.</p> <p>3. 통·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임기만료시마다 위·해촉한다.</p> | <p>2.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,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.</p> <p>3. 통·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임기 만료시마다 위·해촉하되 통장의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         |
| <p>&lt;신 설&gt;</p> <p>③ 통장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.</p>  | <p>4.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통장모집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 횟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</p> <p>③ 동장은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.</p>   |
| <p>제5조의2(통·반장 해촉) 동장은 통·반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~5. (생 략)</p> <p>6. 통장 윤리강령을 위반한 때</p>   | <p>제5조의2(통·반장 해촉) -----<br/>-----각 호-----<br/>-----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별표의 부산광역시 북구 통장 윤리강령 -----</p> <p>7.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</p> <p>8. 그 밖에 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|
| <p>&lt;신 설&gt;</p> <p>7. 기타 지도력 등의 문제로 더 이상 통·반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</p>  |  |

제5조의3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장이 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제5조의4(통·반장 위·해촉 심의 위원회)① 동장은 통·반장은 위·해촉하고자 할 경우 통·반장 위·해촉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
② 제1항의 통·반장 위·해촉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<삭 제>

제5조의4(통·반장 위·해촉 심의 위원회)① 동장은 통·반장을 -----  
-----  
-----구  
성·운영-----.  
② -----  
----- 구성·운영-----  
-----정하되  
통·반장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6조(명예반장) ① (생략)  
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  
로서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  
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.

제7조(임무) 통·반장은 동장의 지  
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  
를 처리한다.

1. ~ 9. (생략)

10.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 
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

제9조(건의사항의 존중처리) ① 동  
장은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 
신속하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 
하며,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 
한다. 단, 동자체 해결이 가능한  
사항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건의사항 중 자체 해  
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  
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당해기  
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 
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③ 처리된 건의사항은 동장을 통  
하여 반원에게 다음 반상회 때  
까지 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,  
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  
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명예반장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반내 -----  
-----  
-----.

제7조(임무) -----  
----- 각호 -----  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----- 따라 부여된 임무 및  
그 밖에 -----

제9조(건의사항의 존중처리) ① -----  
-----  
----- 보고하여야  
-----.  
----- 동자체 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건의사항 중 -----  
----- 지체 없이  
----- 해당  
----- 기관 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 
-----.



제14조(실비변상) ① 통장에게는  
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  
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  
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공무  
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  
으로 한다.

② (생 략)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 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 
정한다.

제14조(실비변상) ① ① 통장에게-  
-----필요한 실비를 보상  
하기 위하여 -----  
-----동 소속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시행규칙) -----시행에  
-----  
-----.